



제1911호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146 호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세 무 1 과 2
- 규 칙 제 1147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세 무 1 과 6

예 규

- 예 규 제 97 호 「남동구 문화재 보존 관리 종합 지침」 일부개정예규

문 화 관 광 과 19

공 고

- 공 고 제 994 호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 활 경 제 과 23
- 공 고 제 995 호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 무 과 32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고 시

- 고 시 제 5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도 시 재 생 과 55
- 고 시 제 56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 시 재 생 과 62
-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회 람								
--------	--	--	--	--	--	--	--	--

규 칙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16일

남동구 규칙 제1146호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지방세(가산세 포함)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illegible][illegible]

364mm×257mm(백상지 80g/m²)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2024.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정보통신망의 명칭 변경(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조, 제11조)
- 기존의 ‘본세’를 ‘지방세(가산세 포함)’으로 별지 서식의 문구 정비 (안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규 칙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16일

남동구 규칙 제1147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5조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항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도)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구체적 내용(명세서): 뒷면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뒤 쪽)

명세서

[illegible]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 하였음을 발의일 : 년 월 일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구·군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가산횟수	물건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계	

364mm×25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illegible][illegible]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m²)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뒷면을 이용한다.

■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원) (단위: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2024.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서식의 인용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정보통신망의 명칭 변경(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조, 제18조)
- 가산금·증가산금의 명칭 변경(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9조, 제15조)
- 기존의 ‘본세’를 ‘지방세(가산세 포함)’으로 별지 서식의 문구 정비 (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갑),(을), 제10호, 제13호서식)

예 규

남동구 문화재 보존 관리 종합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16일

남동구 예규 제97호

남동구 문화재 보존 관리 종합 지침 일부개정예규

남동구 문화재 보존 관리 종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문화재 보존 관리 종합 지침”을 “남동구 국가유산 보존 관리 종합 지침”으로 한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에 대하여는 연1회이상”을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변화등”을 “변화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은”으로 하고, “보호관리”를 “보호·관리”로 하며,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유산 소재 경내에서는 낙서 등 훼손을 방지하고, 오물제거, 제초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바. 국가유산 인근학교나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국가유산 애호사상을 고취토록 한다.

아. 보존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시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자. 사적지 내의 유적 파괴행위나 석조물의 반출행위를 금하고 희귀한 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한다.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국가유산”으로, “집결되는”을 “직결되는”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향토 문화재, 지방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 시도(국가) 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비지정 문화재중”을 “비지정국가유산 중”으로,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지정 지방”을 “지정”으로, “문화재의 보수관리”를 “국가유산의 보수관리”로, “문화재의 소유자”를 “국가유산의 소유자”로, “하여 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관리국”을 “국가유산 보수는 국가유산 관리기관”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는”을 “국가유산 관리기관에서는”으로, “설계승인 기술감독등”을 “설계승인·기술감독 등”으로, “할 것임”을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보조할 것임”을 “보조한다”로 한다.

같은 목 2) 중 “승인후 지방에서”를 “승인 후”로, “각 별 유의한다”를 “각별히 유의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문화재 보수”를 “국가유산 보수”로,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시설물등에”를 “시설물 등의”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은”으로 하고, “퇴락 누수부분등”을 “퇴락·누수 부분 등”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문화재에 대하여는긴급한”을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긴급한”으로, “지향한다”를 “지양한다”로 하고, 같은 목 5) 중 “시비”를 “국·시비”로 한다.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보호구역내”를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국가유산”으로, “휴게소등”을 “휴게소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 보호구역내”를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로,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 보호구역내 신무허가”를 “국가유산 보호구역 내 새로운 무허가”로 한다.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구 및 동 단위별로 문화재”를 “구에서는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칼라와 흑백으로”를 “컬러로”로 하며, “현상 변경등”을 “점검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 등 맞춤법 오류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 조문 내의 일부 오타나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음
: 안 제1호 자목 등
- 국가유산의 관리체제의 단위를 구로 통일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4호 가목
- 유사한 내용의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 안 제4호 다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994호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통해 피해 시 충분한 보상 및 신속한 경영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폐지에 따른 현행화(안 제4조제3항)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생활경제과

☎ 453-2668, FAX 453-2669

4. 개정조례(안) : 별첨. 끝.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통해 피해 시 충분한 보상 및 신속한 경영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폐지에 따른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현행화 함

☐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폐지에 따른 현행화(안 제4조제3항)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 기타 인용법률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를 “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중 “규칙 제8”을 “규칙 제8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등이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그</u> ----- ----- ----- ----- ----- ----- ----- ----- ----- ----- ----- ----- -----.
<u><신설></u>	④·⑤ (현행과 같음) <u>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지원)</u> 구청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36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 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공중화장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

----- 규칙 제8
조-----
-----.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위탁관리) ① -----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
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공중화

<u>실 설치 및 관리 조례</u>」,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u>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u>」,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995호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제안서 평가위원회 처리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20% 이상 위촉 의무화(안 제4조)
-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안 제5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 명확화(안 제6조)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전 평가위원의 사전접촉 확인(신고)서 제출 및 감점 규정 신설(안 제7조)
- 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별지 제4호 및 제6호서식)
- 그 밖에 상위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재무과 / ☎ 032-453-2263, FAX 032-453-22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제안서 평가위원회 처리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가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20% 이상 위촉 의무화(안 제4조)
-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안 제5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 명확화(안 제6조)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전 평가위원의 사전접촉 확인(신고)서 제출 및 감점 규정 신설(안 제7조)
- 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별지 제4호 및 제6호서식)
- 그 밖에 상위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시행 2024.04.01.])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사의 경우 설계도를 포함한다)(이하”를 “(이하”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주관하고”를 “주관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발부부서”를 “사업발주부서”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위원으로 선정한다”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천하게 할”을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사업발주부서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용역”을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이해당사자”를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재직”을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발주부서에 기피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발주부서에 회피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를 “평가위원 7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셋째자리”를 “다섯째자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에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 ⑤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사업발주부서 또는 위원 본인·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관련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제4조 관련)

성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원 예비명부(제4조 관련)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각 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가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 기파·회파 신청서(제5조 관련)

- ☐ 사 업 명 :
- ☐ 기파·회파 위원

성 명	소 속	기파·회파 사유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년 월 일

(인)

[별지 제5호서식]

위원별 채점집계표(제7조 관련)

□ 해당업체(기관)명 :

위 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		
○○○		
○○○		
○○○		
○○○		
○○○		
○○○		
평 균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한다.
-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작 성 자 : 직 책 _____ 성 명 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팀장 성 명 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과장 성 명 _____ (인)

[별지 제6호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제7조 관련)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발부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생략)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5조(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④ -----

----- 사업발주부서 -----

-----.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③ -----

-----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

심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

1. -----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2. -----
--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
-----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
--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발주부서에 기피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 ④ (생략)

<신 설>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생략)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

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발주부서에 회피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 평가위원 7명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5호서식) -----

-- 다섯째자리 -----.

③ ----- 별지

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

제5호서식-----

---. -----

-----. 단, 이 경우에도 평
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에
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
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⑤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
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
을 사업발주부서 또는 위원 본
인·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
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
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
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

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관련</u> <u>법령</u>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입찰관련서 류 또는 입찰공고내용 등을 참 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지 <u>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u> <u>기준</u> 」 ----- ----- ----- -----.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

라.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사. 평가요령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천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타.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절 4. 사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 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요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4-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3,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5. 16.

남 동 구 청 장

가.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현지구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 당초: L=50m, B=6m, A=442m²
- 변경: L=50m, B=6m, A=322m² (감 120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0. 7. 16.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1.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구분	동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 고
1	기정	장수동	381-3	도	3390.0	52.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변경	장수동	381-3	도	3390.0	44.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중1-10호선 면적제외 (진입부 정비)
2	기정	장수동	751-21	도	59.0	15.0	도로	국유지	국토교통부			
	변경	장수동	751-21	도	59.0	15.0	도로	국유지	국토교통부			중1-10호선 면적제외 (진입부 정비)
3	기정	장수동	394-1	도	737.0	29.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변경	장수동	394-1	도	737.0	27.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중1-10호선 면적제외 (진입부 정비)
4	기정	장수동	390-4	대	23.0	23.0	도로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2번길 9, *층 (장수동)			
	변경	장수동	390-4	대	23.0	23.0	도로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2번길 9, *층 (장수동)			
5	기정	장수동	394-7	잡	39.0	39.0	도로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변경	장수동	394-7	잡	39.0	38.0	도로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6	기정	장수동	390-3	대	279.0	-	도로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2번길 9, *층 (장수동)			
	변경	장수동	390-3	대	279.0	9.0	도로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2번길 9, *층 (장수동)			
7	기정	장수동	751-20	도	72.6	92.0	도로	국유지	국토교통부			
	변경	장수동	751-20	도	72.6	70.0	도로	국유지	국토교통부			
8	기정	장수동	393-2	대	55.0	55.0	도로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변경	장수동	393-2	대	55.0	55.0	도로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일련 번호	구분	동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 고
9	기정	장수동	393-3	대	55.0	53.0	도로	원*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290번길 60 ***동 ***호(이천 신문코아루아파트)			
	변경	장수동	393-3	대	53.0	53.0	도로	원*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290번길 60 ***동 ***호(이천 신문코아루아파트)			
10	기정	장수동	391-5	도	12.0	12.0	도로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2
								오*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 35-3 32블록 1, 4롯데 벽산블루밍아파트 ****-****			1/2
	변경	장수동	391-5	도	12.0	12.0	도로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2
								오*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 35-3 32블록 1, 4롯데 벽산블루밍아파트 ****-****			1/2
11	기정	장수동	392	전	219.0	-	도로	오*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상동 ****-*			
	변경	장수동	392	전	219.0	1.0	도로	오*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상동 ****-*			
12	기정	장수동	392-2	전	55.0	55.0	도로	오*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상동 ****-*			
	변경	장수동	392-2	전	55.0	55.0	도로	오*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상동 ****-*			
13	기정	장수동	391-11	대	8.0	8.0	도로	오*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변경	장수동	391-11	대	8.0	7.0	도로	오*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4	기정	장수동	368-9	도	1,222.6	9.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	장수동	368-9	도	1,222.6	62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1-3호선 면적제외 (재포장)
	기정	소 계				442						
	변경	소 계				322						

2. 지장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장수동	392-2	콘크리트 포장	M2	5.5	해***크	남동구 장수동 ***	

3. 한전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94-1	NO. 0+5.0	R	8920D631수현지38L5	한국전력	
2	장수동	391-11	NO. 3+1.0	R	8920D645수현지38L4R2L2L1	한국전력	

4. 체신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94-1	NO. 0+5.0	R	C-151001-1025	LGU+	
2	장수동	393-3	NO. 2+10.0	R		KT	
3	장수동	751-20	NO. 2+10.0	L	만수6전주번호15-3	KT	
4	장수동	391-11	NO. 3+1.0	L		KT	

5. 가로등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81-3	NO. 0+6.00	R	후-05	남동구청	

6. 가로수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81-3	NO. 0+6.00	R		남동구청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81-2번지 일원(수현지구)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당초	소로	3	2	6	국지 도로	50	중1-10 장수동 394	소3-1 장수동 40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50	중1-10 장수동 394	소3-1 장수동 40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 도시계획도로 면적: (당초)315㎡ → (변경)322㎡ (증 7㎡)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소로3-2	소로3-2	. 도시계획선 폭원 변경 - 폭원: 당초(6m) → 변경(6.6m)	.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른 도로 선형 및 면적 변경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4-5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3,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5. 16.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81-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수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	20~23	보조 간선	1,380 (354)	광3-15	소1-1 만수동	일반 도로	91.4.151 (인고91-55)	수현
변경	중로	1	10	20~25	보조 간선	1,380 (354)	광3-15	소1-1 만수동	일반 도로	91.4.151 (인고91-55)	면적,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40	중1-10 장수동 398-2	소3-5 장수동 355-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40	중1-10 장수동 398-2	소3-5 장수동 355-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면적 변경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63 (60)	중1-10	광3-1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01	중1-10 장수동 387	소2-1 장수동 394-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50	중1-10 장수동 394	소3-1 장수동 39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231	소3-1 장수동 369-1	소2-1 장수동 355-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231	소3-1 장수동 369-1	소2-1 장수동 355-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면적 변경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98	소2-1 장수동 356-3	소3-3 장수동 37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98	소2-1 장수동 356-3	소3-3 장수동 37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면적 변경
기정	소로	3	5	6~6.6	국지 도로	165.7	중1-10 장수동 397-4	- 장수동 40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변경	소로	3	5	6~6.6	국지 도로	160.7	중1-10 장수동 397-4	- 장수동 40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면적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시설명	변경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3호	소로3-3호	- 면적 : 1,390m2 → 1,442m2 (증 52m2)	○ 선형개량 및 지장물 저축으로 인한 면적증가
소로2-1호	소로2-1호	- 면적 : 1,158m2 → 1,156m2 (감 2m2)	○ 중로1-10호 회전교차로 구간 폭원 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중로1-10호	중로1-10호	- 면적 : 15,830m2 → 15,962m2 (증 132m2) - 폭 : 20~23m → 20~25m (증 2m)	○ 회전교차로 폭원 변경으로 인한 면적 및 폭원 증가
소로3-4호	소로3-4호	- 면적 : 603m2 → 596m2 (감 7m2)	○ 소로3-3호 선형변경으로 인한 면적 감소
소로3-5호	소로3-5호	- 면적 : 1,055m2 → 1,008m2 (감 47m2) - 연장 : 165.7m → 160.7m (감 5m)	○ 중로1-10호 회전교차로 구간 폭원 변경으로 인한 연장 및 면적 감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